

의안번호 제97호

#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윌일	2017. 11. 17.

##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 제97호

제출연월일: 2017. 11. 17. 제 출 자: 논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○ 자유학기제 및 주 5일제 수업의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 년활동과 청소년상담, 진로체험, 학교밖 청소년지원 등 수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고,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립하려는 「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」의 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 으려는 것임

### 2. 출연개요

- O 설립근거
  - 「민법」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  - 「청소년기본법」제26조(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)
 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
- O 출연기관 :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
- O 설립형태 : 비영리 재단법인
- O 재단설립 : 2018년 상반기(예정)
- O 출 연 금 : 150,000천원
  - 자 본 금 : 50,000천원 (2017년 제1회 추경예산, 명시이월)
  - 재단운영 : 100,000천원 (2018년 본예산 계상)
  - O 출연방법 : 현금출연

- O 출연금 및 사업비 사용계획
  -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자본금 50,000천원
  - 청소년행복재단 사무국장 인건비 및 운영비 100,000천원
    - · 사무국장 인건비 49,800천원×1명 = 49,800천원
    - ※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준용(상한액 66,274 / 하한액 33,390)
    - · 제경비(출장여비, 퇴직적립, 4대보험 등) 13,700천원×1식 = 13,700천원
    - · 재단 행정·회계시스템 구축 22,500천원×1식 = 22,500천원
    - · 일반운영비 등 1,400천원×10월 = 14,000천원

### 3. 주요사업

- O 청소년 체험·수런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 운영 및 진흥사업
- O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축제·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
- O 청소년을 위한 복지·보호·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O 청소년 진로체험 및 학교연계사업
-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포상 및 사업
- O 청소년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
- O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논산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## 4. 그 동안 추진사항

- O 2017. 1. 24 : 청소년행복재단 법인설립 추진현황 보고
- O 2017. 2. 9 ~ 2. 27 : 출연기관 설립 1차협의(충청남도)
- O 2017. 5. 4 ~ 8. 7 :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
- O 2017. 8. 8 ~ 8. 23 :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
- O 2017. 8. 24 ~ 8. 28 :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
- O 2017. 9. 12 ~ 10. 27 : 출연기관 설립 2차협의 완료(충청남도)
- O 2017. 11. 3 : 출연기관 설립 협의결과 회신 "설립적정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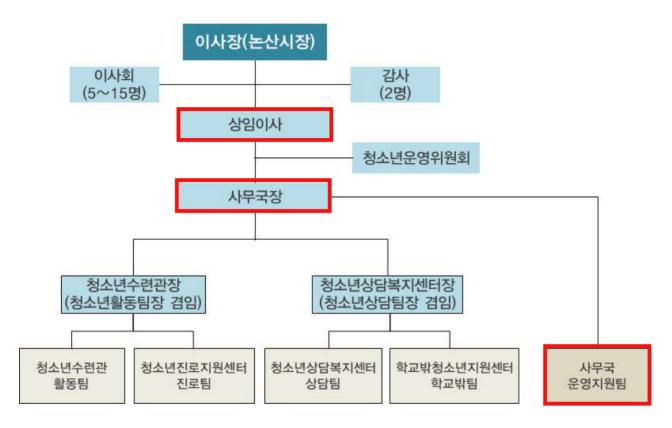
## 5. 향후 추진계획

- O 2017. 11 ~ 12 :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정
- 2018. 1 ~ 2 : 청소년행복재단 발기인 구성 및 발기인 대회
- O 2018. 2 ~ 3 : 재단설립 허가신청 및 자본금 출연
- 2018. 3 ~ 5 : 법인 규정제정 및 인력채용
- 2018. 6 ~ 8 : 법인 기능정비 및 시스템 구축
- O 2018. 9월 이후 : 법인출범 및 공식업무 개시
- 6. 청소년관련 시설현황 : [붙임1]
- 7. 청소년관련 시설현황 : [붙임2]
- 8. 타 시·군 법인설립 현황 : [붙임3]
- 9. 관계법령 발췌서 : [붙임4]

## 붙임 1

## 청소년행복재단 조직구성(안)

## 1 조직구성(안)



※ 2018년 : 사무국장 채용 / 2019년 : 대표(상임)이사, 사무국 직원 2명 채용

## 2 인력(안)

구 분	계	대표(상임) 이사	사무 국장	관장 센터장	청소년 활동팀	청소년 진로팀	청소년 상담팀	학교밖 지원팀	운영 지원팀	비고
현 재	22			2′	10		8		2′	
법 인	23	1	1		9	3	4	3	2(2*)	
증·감	1	+1	+1	-2	-1	+3	-4	+3		

<sup>※</sup> 파견 공무원 2명\*, 현재인원중 겸임 공무원 4명'

⇒ 조직 및 인력산출 :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준용(충남연구원 수행)

## 붙임 2 청소년관련 시설현황

## □ 청소년수련관 현황

## 1 기관현황

O 시 설 명 : 논산시청소년수련관

O 위 치 : 논산시 논산대로 424(지산동)

O 개 관 일 : 2000. 5. 9

O 설립근거: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제11조(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O건립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국 비	도 비	시 비	비고
합계	4,204	2,280	660	1,264	
시설건립비	3,904	2,280	660	964	
부지매입비	300	-	-	300	

### O 주요연혁

- 1998. 02. 16 : 청소년수련시설 허가

- 1998. 03. 06 : 착 공

- 1999. 10. 20 : 청소년수련시설 등록

- 1999. 11. 01 : 준 공

- 2000. 04. 20 : 학교법인 성령학원(한민대) 위탁체결

- 2000. 05. 09 : 청소년수련관 개관식 및 청소년음악회 개최

- 2002. 12. 31 : 학교법인 성령학원(한민대) 위탁종료

- 2003. 01. 01 : 학교법인 건양학원(건양대) 위탁체결

- 2006. 03. 01 :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시

- 2008. 12. 31 : 학교법인 건양학원(건양대) 위탁종료

- 2009. 01. 01: 市직영 개시

- 2014. 09. 29 : 청소년활동 유공기관 표창(충청남도지사)

- 2016. 12. : 충청남도 청소년참여대회 우수(충청남도교육감)

※ 2013~16년, 4년 연속 방과후아카데미 우수기관 선정(여성가족부)

## 2 시설현황

○ 시설규모 : 부지 4,958m², 건축면적 3,995m²(지하1층, 지상3층)

O 주요시설

층별 5		면적(m²)	주요시설	비고
계		3,995.55		
지 하 (문화존)		1,632	인터넷부스, 노래방, 댄스실, 당구장, 탁구대, 작은도서관, 전기·기계실	494평
	1층	989.44	수련관사무실, 상담복지센터, 회의실, 실내체육관(150평), 집단상담실	299평
지상	2층	492.64	교육강의실, 방과후교실(4,5,6학년)	149평
	3층 881.47		청소년극장(73평,147석), 강당(82평)	266평

## 3 운영현황

O 운영인력

구분	계	운영대표	팀 장	청소년 지도사	방과후 아카데미	조리원	비고
정 원	11명	1	1	5	3	1	
현 원	11명	1	1	5	3	1	

※ 운영대표 : 청소년팀 공무원 겸임(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에 따른 대표 자격 보유)

O 연도별 이용현황

연도별 누 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비고
376,778명	44,526명	79,124명	88,978명	84,058명	80,092명	전년대비 177%증가

 ⇒ 2014년 이후 감소요인 :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시 성인대상 프로그램 및 이용

 지양에 따른 성인이용자 수 감소

## 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

## 1 기관현황

O 시 설 명 :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

O 위 치 : 논산시 논산대로 424(지산동) 1층

O 설립일: 1994. 5. 14

O 설립근거: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

O 주요연혁

- 1994. 05. 14 : 개 소(논산시청소년상담실 운영위원회 위탁)

- 2002. 11. 20 : 우수 청소년상담실 선정 표창(문화관광부장관)

- 2011. 01. 01: 市직영 개시

- 2011. 07. 01 : 논산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사업개시

- 2014. 02. 03 :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사업개시

- 2014. 08. 30 :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 20주년 기념행사 및

제1회 논산시 청소년 진로 · 직업박람회 개최

- 2015. 08. 22 : 제2회 논산시 청소년 진로·직업박람회 개최

- 2016. 11. 25 :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우수기관 표창(여성가족부장관)

- 2017. 6. 1 ~ 2 : 제4회 논산시 청소년 진로박람회 개최(9,000여명 참석)

## 2 운영현황

O 운영인력

구분	계	센터장	팀 장	상담지원	통합지원	학교밖 지원	비고
정 원	9명	1	1	2	2	3	
현 원	9명	1	1	2	2	3	

※ 센터장 : 평생교육과장 겸임

O 연도별 상담실적 및 이용현황

연도별 누 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비고
374,137명	69,643명	63,244명	69,249명	74,647명	97,354명	_

# 붙임 3 타 시·군 법인설립 현황

시군	재단명칭	설립 연도	운영 형태	운영시설	출연금 (단위:억원)	인력	비	고
	(재)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	2008	직영	청소년활동진홍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(2)	자본:3 예산:40	37(63)		
서산	(재)서산시 복지재단	2011	직영	수련관, 상담센터, 여성,어린이희관, 자원봉사센터	자본:2 예산:14.7	46		
홍성	(재)홍성군 청소년수련관	2002	직영	수련관, 상담센터, 문화의집	자본:3 예산:10	19		
예산	(재)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	2013	직영	수련관, 상담센터, 문화의집	자본:3 예산:12.8	21		
수원	(재)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	2019	직영	문화센터,수련판2 문화의집2 상담복지센1 미디어센터1 진로체험센터1	자본:27.5 출연:75 자체:30	정:98 현:92		
성남	(재)성남시 청소년재단	2008	직영	수련관5, 문화의집2 상담복자센터 1	자본:0.5 출연:172 자체:70	정:192 현:182		
고양	(재)고양시 청소년재단	2016	직영	수련관2,문화의집2 상담복지센터1, 진로센터1	자본:0.5 출연:43	10		
안양	(재)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	1999	직영	수련관2, 쉼터1 문화의집3, 상담복지센터1	자본:0.1 출연:39 자체:30 보조:8.8	정:68 현:66		
용인	(재)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	2009	직영	수련원1, 수련관1, 문화의집3 상담복지센터1	자본:0.5 출연:35 자체:45 보조:6	정:88 현:66		
평택	(재)평택시 청소년재단	2000	직영	수련원1, 문화센터1 문화의집5, 쉼터1 상담복지센터 1	자본:0.1 출연:20 자체:4.2 보조:27	정:49 현:28		
김포	(재)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	2010	직영	청소년수련관1 수련원1 문화의집3 상담복지센터1	자 <del>본</del> :0.5 출연:54 자체:3	정:57 현:49		
광명	(재)광명시 인재육성재단	2014	직영	수련관1 진로직업체험센터1 문화의집3	자본:18 출연:26	정:54 현:33		
구리	(재)구리시 청소년수련관	2003	직영	수련관1 상담복지센터1 자원봉사센터1	자본:0 출연:4 자체:33	정:51 현:49		
이천	(재)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	2016	직영	수련관1 문화의집3 상담복지센터1	자본:0.3 출연:23	정:37		
의정부	(재)의정부시 청소년재단	2015	직영 예정	수련관 1 상담복지센터 1 문화의집 1	미정	미정		
화성	(재)회성시 여성・청소년재단	설립 중	직영 예정	미정	미정	미정		
의왕	(재)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	2017	직영	수려관1 상담복지센터1	자본:3 출연:	33		
화성	(재)화성시 인재육성재단	2006	직영	장학관 창의지성교육센터	자본:6 출연:100	정:34 현:28		
안산	(재)안산시 인재육성재단	2014		없음	자본:3 출연:11	정:4 현:4	_	

## 붙임 4

## 관계법령(발췌)

### □ 「민법」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## □ 「청소년기본법」

제26조 (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)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.

### □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

- 제5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 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·청소년활동프로그램·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・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・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□ 「지방재정법」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 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-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또는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  - 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  -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  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  - 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 - 1. 설립 목적
  - 2. 주요 업무와 사업
  - 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  - 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